

인장관리 규정

제정 2021.12.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 (이하 “도체육회” 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인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인장이라 함은 도체육회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직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.

제3조(종류) ① 도체육회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인
2. 실인
3. 계인

② 전항 각 호 외에 특히 필요할 때는 별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(내용 및 규격) ① 인장의 내용은 직위의 명칭으로 하고 자체는 한글로 한다.

② 회장 직인은 “경상북도체육회 장” 이라고 가로로 새긴다.

③ 인장의 형상은 [별표 1]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크기는 사각형의 길이 지름이 3cm 이내로 하고 실인은 원 지름이 각 2cm 이내로 한다. 다만, 계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인장의 등록) ① 인장을 제작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그 형상 규격 또는 내용 등에 관하여 미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인장은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 직인 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문서 규정에 의한 문서주관 부서에서 관장한다.

③ 회원단체는 담당 부서에 직인등록대장[별지 제1호 서식]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관 및 사용) ① 인장은 도체육회 직제 또는 사무분담 규정에 의한 해당 업무 주관 부서에서 보관하되,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인장은 직위, 명칭 또는 성명의 끝 자가 인장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.

③ 회장 직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직인사용 기록부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7조(폐기 및 재조각) ① 인장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에 의한 직인을 주관 부서에 재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각 또는 폐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직인 대장은 이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칙) 도체육회 회원단체의 인장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(2021.12.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.01.01부터 시행한다.

